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2007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1. A

2. 주식회사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윤진수, 이성희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56316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F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A,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식회사 E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신용보증금액’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보증기간’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 내지 제11쪽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 C는, 피고 C와 E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어음을 유통해 주었는데, E가 어음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 C까지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E의 어음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E는 신규자금을 추가로 유통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A, C는 E가 부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E 대표이사 F의 거짓말에 속아 어음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피고 C가 E에 발행해 준 어음을 E가 유통시킨 다음 변제하지 않아 이를 피고 C 측에서 변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E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나아가 E가 피고 C에 발행해 준 어음은 내부적으로도 피고 C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된 것인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51398 판결 등 참조), ③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측에서 E의 어음금채무를 변제한 것을 신규자금을 추가로 유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와 피고 C는 E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 ④ 피고 A와 피고 C는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E가 발행한 어음들이 지급거절된 직후에 E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1)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A,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피고 D의 2022. 10. 26.자 준비서면 및 그 첨부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D의 2022. 10. 26.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강상욱, 판사 송미경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990㎡

2. 위 지상

[도로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2층 공장

1층 336.60㎡

2층 336.60㎡

내역 1층 공장2층 창고 및 사무실

시멘트블록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3.77㎡

3.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948㎡

4. 위 지상

[도로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철골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공장 1층 399.76㎡

5. 경기도 광주시 전 241㎡

6.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제 동[도로명주소 : 경기도 김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33.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김포시 대 74804㎡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74804분의 76.5049

1) 2020. 5. 12. E가 발행한 어음들이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되었고(을1, 을가16), 피고 A와 피고 C는 2020. 5. 13. 및 2020. 5. 22.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